

# 산업 · 환경설비공사업

## ■ 업무내용

종합적인 계획 ·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, 환경오염을 예방 · 제거 ·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·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, 에너지 등의 생산 · 저장 ·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
 EX: 제철 ·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, 환경시설공사(소각장, 수처리설비, 환경오염방지시설, 하수처리시설, 공공폐수처리시설, 중수도, 하 ·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), 발전소설비공사등

## ■ 등록기준

### 1. 자본금

법인	개인
8.5억원 이상	17억원 이상

### 2. 기술능력

#### 기술자격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초급 이상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· 재무, 건설기획,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한다) 의 건설기술인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, 토목, 조경, 광업자원, 기계, 금속 · 재료, 화공, 전기 · 전자, 정보통신 안전관리, 환경 · 에너지 분야의 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.

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.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, 토목조경, 광업자원, 기계, 금속 · 재료, 화공전기 · 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 ·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
- 2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종급 이상의 건설기술인

\*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 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등급 이상	D등급
산업 · 환경설비공사업	1,555,600원	8.5억원	200좌 (311,120,000원)	225좌 (350,010,000원)

\*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

### 4. 시설 · 장비

#### 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\*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#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